

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펀셋 플러스5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판매가격 기준 시간 변경	<b>제23조(판매가격)</b> ① (생략)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<u>17시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<b>제23조(판매가격)</b> ① (생략)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<u>15시 30분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및 기 준시간 변경	<b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3영업일</u> ( <u>17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영업일</u> 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( <u>17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5영업일</u> 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 (생략)	<b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2영업일</u> ( <u>15시30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3영업일</u> 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( <u>15시30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영업일</u> 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환매 기준시간 변경	<b>제26조(환매연기)</b> ① ~ ④ (생략) 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	<b>제26조(환매연기)</b>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

	<p>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<u>17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li> <li>2. (생략)</li> </ol>	<p>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<u>15시 30분</u>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-	<신설>	<p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<u>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